

제405회국회
(임시회)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4월4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5)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5)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1)
15.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16.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9)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2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2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8)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0)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8)

상정된 안건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2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2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2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2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2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 2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	2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	2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2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5)	2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	2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5)	2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1)	2
15.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2
16.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2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9)	2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3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3
2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3
2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3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8)	3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620)	3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8)	3

(09시33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방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내일은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사실 법안소위를 하루 종일 해서 오전에 병무청, 오후에 방사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후 14시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안소위가 오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는 병무청에 대한 법안을 그리고 10시 30분부터는 방사청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0)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2)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7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2)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5)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5)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1)

15.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6)

16.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3)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099)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229)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240)

2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2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838)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04620)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628)

(09시34분)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윤석호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류중재 국고국 계약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과 정은성 방산진흥본부 정책기획팀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위원수를 전체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체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각 기관별 추천 인원수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5명에서 2명,

법무부는 5명에서 2명, 국방부는 5명에서 3명, 병무청은 5명에서 2명, 국회 국방위는 4명에서 2명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변호사협회 추천 인원 5명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수를 축소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타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편입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심사를 위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4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2개 조로 축소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에 따른 회의운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수 축소, 5명에서 3명 이내로 줄이는 부분도 현재 위원장과 사무국장 2인으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위원수,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기관을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포함 필요성 등을 감안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칙으로 기존의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에 보시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현황인데 2000년 1962건에서 작년 22년 453건으로 크게 감소한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4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수 구성, 즉 29명을 11명으로, 상임위원은 5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축소할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쪽에 보시면 3항 각호에서 각 기관별 추천 인원수를 줄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우측의 비고란 부칙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필요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해서 달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대한변협의 법조인의 지속적인 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수용해서 13인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인데 변호사 협회를 제외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이 변호사협회에서 오지 않아도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법조인 출신이라서 제외한 것인데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2명을 넣어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갑석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것인데 신청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무래도 초창기에 많았던 것은 그동안 신청했던 인원들이 누적이 된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한 450건 정도가 신청 건수가 되겠습니다.

○설훈 위원 450건 중에서 이를테면 종교적 사유를 제외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잘 못 들었습니다.

○설훈 위원 지금 사백오십몇 건인데 그중에서 종교적인 사유, 말하자면 여호와증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지금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것은 14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이를테면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특정하게 직업과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총기사용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을 가진 사유로 편입이 된 인원이 소수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증인이 아닌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저희가 사전조사도 하고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 의견도 다 듣고 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게 말이 쉽지 판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이를테면 신뢰를 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출석을 언제 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쉽게 쉽게 판정할 텐데 그런 기록도 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 또는 생각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역 쪽의 심사위원회에서 크게 세 가지로 고려요건을 정해 놓고 정형화된 고려요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와 심사를 병행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 궁금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굉장히 귀한 사례이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도나도 다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병역을 면탈할 이유가 만들어진다면 사회적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을 또 범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니까 기록들을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별도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설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려면 심리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전에 정신과 의사가 심리전문 역할을 했습니까, 29명 중에서?

○병무청차장 김종호 지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1명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분이 주로 심리 관계 이런 부분을 묻고 질의하고 판단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관련해서 그분이 전담해서……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게 돼도 정신과 의사는 그대로 있게 되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이것은 포함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소위원장 김병주** 이 분야는 유균해 국장이 제 일 전문가이신데 전에 대체역 초창기부터 대체역 국장을 했던가요, 단장? 잠깐 나와 주세요.

사실 대체역은 생긴 지 한 2년하고 4개월, 2년 반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체역 심사위원들을 많이 밀려 있어서 29명 했고, 줄이는 법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라고 한 이유는 대체역 분야가 초창기라서 병무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대정부질문 때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해 보니까 법무부장관이 거의 한 번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면담도 안 해 보고 대체역이 법무부에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심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 설훈 위원님이 물은 것 있잖아요, 그런 현황을 잠깐 한 2~3분만 설명을 해 주고 국방위원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이 법안이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대체역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병역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대체역 담당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본인들이 대체역을 신청하지만 복무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신념이 없으면 대체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념자든 종교적 신념자든 저희들이 대체역 복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일관성, 여러 가지 활동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 때까지 범죄행위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법무부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무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무했을 때 아까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1200명 정도 배출이 됐지요? 거기서 한 몇 퍼센트……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심사는 그 이상 했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합숙을 할 수 있는 환경 내에

서 매년 몇백 명 이상씩 법무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종교적 신념 외의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 정도 이내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맞습니다. 아주 1% 이내고요.

사실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화적인 신념이 종교 이외의 사유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사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 신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시켜서 29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질문을 해 가며 대상자의 어떤 일관적인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직도 경교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과거에는 경비교도대라고 불렀는데요. 경비교도대가 쓰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대체역 복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거의 비슷한데 이 인원들은 총기나 이런 걸 휴대를 못 하기 때문에 재소자하고는 교류를 안 하고 주로 허드렛일을 많이 하지요. 청소하고 식당, 시설관리 이런 데 국한됩니다.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맞습니다. 절대 경제 업무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냥 서비스업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예, 제가 예전에 법무부 밥을 오랫동안 먹어 봐서 압니다.

○**설훈 위원** 그분들이 36개월입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36개월 복무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대체복무하기 전에는 수형을 시켰잖아요. 그때도 36개월이었으면 3년이었습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아닙니다. 3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1년 6개월 정도 복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1년 6개월 복무?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그때는 재소자로서 있었던 겁니다, 수형자로서.

○**설훈 위원** 수행자로서 1년 6개월 했습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설훈 위원** 그래요? 1년 6개월 하던 수행자를 36개월로 늘려서 바깥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어쨌든 교도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에서 합숙……

○**설훈 위원** 집단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집단수용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본 위원도 예전에 같이 수용돼 있었던 적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들은 작은 성자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히 순박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1년 6개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36개월 근무하게 하는 거는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최초에는 본인들이 수행자가 되지 않고, 사실 그냥 재소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현역복무 18개월의 2배가 되는 36개월에 대한 불만을 약간 조금조금씩 내기 시작하고 있고 헌법소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보통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배 정도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사실은 설훈 위원님 잘 제기했지만 최초에 그 기간을 정할 때 악용하는 인원이 있을까 봐 36개월, 2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유엔 권고는 1.5배였습니다, 맥시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는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시 재평가를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어제 대정부질문 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그 파트였어요. 그거를 좀 더 정부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는 이제 2년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고 악용하는 인원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악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8개월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조금 더 감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공론화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설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 지금 것은 13명……

○**성일종 위원** 국장님, 이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지가 주로 어디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전부 교도소입니다. 100% 교도소입니다.

○**성일종 위원** 교도소 내에서 무슨 일을 해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청소, 아픈 재소자들 간호, 각종 허드렛일, 짐 갖다 주는 것들 그런 모든 서비스 업무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일종 위원** 시간은 얼마를 해요, 근무시간을?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복무환경이 병과 동일합니다. 휴가도 동일하고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하는데 특히 가장 힘든 업무가 급식 관련 업무할 경우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업무를 빨리 완료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자기 업무 맡은 영역에 따라서 근무시간대가 좀 다양하지만 환경 자체는 우리 병사들한테 부여되는 시간하고 동일하게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어쨌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군에 가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 줬지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본인들이 재소자가 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은 확실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게.

지금 근무 기간이 36개월이에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병은 18개월이고?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성일종 위원** 그때 36개월이 만들어졌었던 근거는 뭐였어요? 왜 36개월로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병 근무는 얼마였어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그 당시에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는 해야 군 복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과도하게, 가혹하게 잡으신 면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몇 년도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2년이 지났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당시에 18개월 했다는 거지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예, 지난 정부에서

18개월이 결정이 되어서 18개월 기준으로 2배라는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전에는 실형을 18개월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왜 36개월이 가혹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가혹하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당시 유엔이나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한 1.5배 정도를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유엔이 권고한 1.5배의 기준은 뭐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현역 복무 대비 1.5배.

○**성일종 위원** 현역 복무 대비 1.5배라 했는데 1.5배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는 뭐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 너무 징벌적인 형태로까지 이 제도를 설계할 경우 사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유엔 측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거를 36개월로 할 때 국회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으로 해 냈나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국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회에서 결정했던 거예요?

○**국방부기획관리관 유균혜**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당시에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한 안이었습시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것 그냥 유지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국가가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조차도 또 내린다? 지금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했든 뭐했든 그 자체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그거를 지금 더 줄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김병주** 오늘 이것을 토의하자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공론화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제도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혹시 36개월이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보니까 생활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최소한 병사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 이상 하

든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하고…… 법무부에서는 아예 사각지역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우리 21대 국방위에서 이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기회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점검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다가 정부에서 애기한 2명 포함해서 13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훈 위원** 부칙은?

○**전문위원 신항진** 그 내용하고 부칙의 경과조치까지 같이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의사일정 제2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항과 4항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위헌결정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대체복무요원의 제재 대상 정치단체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7쪽, 현행 규정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가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이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제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게 다 지금 발의돼 있고요. 다 지금 각 위원회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하단에 보시면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군인 복무 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당 및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

기구 등'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쪽,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시면 33조제1항 각호에서 이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9쪽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24조제2항제2호에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로 하고 이 정치단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결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을 전제로 해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타당하지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행위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정치적 행위의 범위를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2항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해서 상세하게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투표 권유라든가 서명 권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행위 제재를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일단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화하는 부분은 역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복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4조제2항제2호의2에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부분 이렇게 준용해서 규정을 구체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문 설명드렸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역시 '그 밖의 정치단체'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윤건영 의원님 안은 역시 정부가 제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준용해서 구체화시켜서 '정당 및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등'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고요. 다만 유경준 의원님 안은 '정당을 제외한 그 밖의 정치단체' 이 규정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유경준 의원님 안처럼 정당만 가입 금지할 경우에 기타 정치단체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지금 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예술·체육요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준용해서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지금 윤건영 의원님이 돼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경준 의원님 안은 2호를 '정당에 가입한 경우'로 이렇게 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 안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20쪽의 근무시간 중 정치행위 제재 규정 신설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앞서 의견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정의견으로서 법체계상 통일성을 위해서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내용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단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군인복무기본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지금 개정 진행 중인데 그 심사 경과를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체복무요원이 합숙 복무를 하는 특성상 근무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구분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공무원하고 군인의 정치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아쉽게도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 정부 수정의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중’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정확한 의견이 있나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저희는 일단 ‘근무시간 내·중’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전후를 따지지 말고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강서구 김민석 구의원과 관련된 사례가 이건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조금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께서는 휴직 신청을 아직 안 하고 계셔서…… 저희는 겸직 허가가 안 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휴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일 정도, 한 4월 초·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직권으로 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첫 케이스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김 모 의원 같은 경우는 30살까지 계속 연기를 했었고—목에 찬 거지요—그래서 구의원도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현재 구의원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법원에 가 있지요, 이것이?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을 제대로 정비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대체역들은 일반 현역과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명시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결정한 경우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헌법소원을 했을 때 이것 족쇄를 풀어 달라는 취지인데 지금 병무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아예 못 하도록 묶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겸직 허가를 안 한다는 거지요.

○설훈 위원 헌법재판소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일단 저희 병무청 입장은 겸직 허가가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설훈 위원님, 제가 이것을 스터디했는데 헌법소원의 취지는, 법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헌법소원에서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중립이 옳다, 그러다 그것을 확대해 주자는 취지보다는 거기에서는 그런 항목이 법에 없다 보니까, 해석상 애매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니까 이거는 빨리 법으로 구체화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악용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되고 또 4년 후에

재선되고 재선 한 두 번 돼서 37세인가요, 몇 세 되면 아예 면해 버리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38세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38세까지 그렇게 악용할 소지도 생겨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취지를 다시 한번 누구 뒤에 실무자라도 있으면 정확히 아는 사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사회복무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나와서 헌법소원의 취지, 그것은 또 우리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설훈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최구기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첫째는 명확성이 위배돼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밖의 정치단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더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영등포 의원 사례를 볼 때 그 의원은, 구로인가?

○소위원장 김병주 강서구.

○설훈 위원 강서구인가?

지금 이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지금 헌재 강서구 의회 의원께서는 병무청이 규정하고 있는 겸직의 의무를 위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겸직의 의무하고 달리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는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겸직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위반도 같이 병무청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학자가 이야기하듯 하지 말고 차장님이 쉽게 설명해 봐요, 학자 논문 쓰듯 이야기하지 말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국장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별도로 정부 의견을 새로 낸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이 부분은,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가지고 와서 새로 신설해서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맞는 거 같은데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 현역이 아닌 중에서 전문연구요원 있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분들은 정치행위 가능하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은 대체복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과 좀 다르게 신분이 계약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민간인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약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법에다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검토는 해 봐야 되겠네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병역은 공정해야 되고 현역이라든가 병역의무 또는 병역의무에 준하는 대체근무라든가 준하는 사회복무요원일 때는 이중 겸직을 하면 안 되지요. 사실 투잡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역에 대한 것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대체역이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이중 금지로서는 제약이 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 면에서는 아까 문구가 그 외 정치단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건데,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면 이걸이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준한 그런 항목들이 포함돼서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설훈 위원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논의를 다시 해 보시지요.

○**송갑석 위원** 혹시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는 작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신문고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내년도 총선 대비해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한 젊은 MZ 세대 사회복지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화시켜 줌으로 해서 이것이 아닌—그것을 뭐 정치활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범법이 아닌 걸로 명확해지는 면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좋은 면이 있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이 애매모호하니까 광의로 잘못 해석을 해 버리면, ‘이것도 정치활동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범위 규정이라든지 정의 부분은 현재 다른 법에서도 논의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어서 그 심사결과를 저희가 같이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요원에 국한해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치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들만의 정치행위 금지만큼은 규정이 명확한 기존의 규정인 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을 원용해 갖고 와서 그대로 정치행위만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정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사실 이거는 조금 시급한 법입니다. 저는 강서구의원 사례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법 정비를 제대로 못 했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정비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제2, 제3의 인원들이, 사례가 안 나타나서 명쾌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원님들 큰 그제 없으면 오늘 동의해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요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정치적 자유를 주라는 쪽이 강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올바른 방향일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거꾸로 사회복지요원들도 정치적 중립 또는 정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쪽으로 가는 결정 같은데 시대 흐름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테면 독일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에도 노조가 있어요. 철모 쓴 시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군인들에 대해서 시민으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시각이 우리가 가야 할 기본적 시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대체복무요원,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과 반대로 사회복지요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또는 군인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자세일까,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시급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논의 자체를 방향을 달리하는 이런 결정이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수결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만장일치로 의견이 없을 때 통상 했고 설훈 위원님 지적도 세계적인 흐름과도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성하고 다음에 토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병무청에서 또 별도로 설훈 위원님한테 법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성일중 위원님이 긴급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 이따 곧 방송을 가져야 돼서 하나 빨리 토의를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위사업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 17936·20333 이것을 먼저 잠시 토의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크게 반대 안 하시면 성일중 위원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번 토의할 기회를 드리고 그것을 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15항하고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의사일정 제15항, 16항이 작성된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이현승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과 그다음에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 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넘겨 보시면 입법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이 두 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로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방위사업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운용되는데 방위사업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특례가 일부 적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방위사업계약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보다 품질·성능 및 기술력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일반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중요 요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은 국가가 거의 유일한 계약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상물이 보편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국가의 수요에 특화된 것이어서 계약가격의 결정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과 민간기업의 이윤보상원칙을 고려한 협상 가격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주로 고가·대규모·장기간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목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전력화 시기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국가계약과 방위사업계약을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방위사업계약에 있어 특히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의 변경 등이 유연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사청 등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방 분야 조달계약법령은 일반 국가조달법제 이외에 별도의 법령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도 우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계약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국가계약법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특수한 방위사업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계약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이 안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쪽은 현행 방위사업법령 등의 주요 방위사업 계약 특례 예시고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그리고 방위산업발전법 등에 일부 규정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위사업계약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36건 그리고 지체상금 징수결정액이 총 1조 729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 민사소송 현황도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1건, 소송가액이 총 7426억 원에 달하는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현 국가계약법 적용에 따라서 방위사업 추진에 제한이 따르는 사례들을 방사청 자료를 재구성해서 적시해 봤습니다.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사례, 둘째는 과도한 소송 발생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 등이 발생하는 사례, 셋째는 유연성 없는 계약 변경의 사례, 넷째는 최저가 낙찰제 우선으로 인해서 품질·성능이 저하되는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각각의 하단에 첨부해 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입니다.

미국 등에서 관련 입법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방사청 제공 자료를 재정리해서 첨부해 뒀고요, 하단에는 기재부에서도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 제정안의 구성은 이현승 의원님 안은 22개의 조, 정성호 의원님 안은 2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22개의 조가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 제정안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18조 정성호 의원님 안만 추가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 제정안의 조문별 개요하고 비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요, 양 제정안의 내용 같습니다.

정의 규정은 전력화지원요소, 방위사업계약, 장기계약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님 안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3조 관계 부분은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음에 4조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를 설치해서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제정안이 다른 부분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님 안이 좀 더 자세합니다. 방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구성 내역들 그리고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제5조 청렴서약제 부분은 이 방위사업계약을 수행할 시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대상자, 서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양 제정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6조의 계약 체결 부분은 이현승 의원님 안은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 등이 체결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성호 의원님 안이 좀 더 자세합니다. 단기·장기·확정·개산계약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현승 의원님 안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방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안은 이 고시할 때 사전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7조에 착수금 및 중도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고 장기계약 시 정산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님 안은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시 기준을 방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부분을 역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특이한 내용을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인증업체 인센티브, 핵심기술 인센티브 등 규정은 양 제정안이 거의 동일합니다.

11조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 이행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체상금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 제정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성호 의원님 안이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이외에 정부 또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제삼자의 책임이 함께 지체의 원인이 된 경우로 지체상금 전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특이 사항입니다.

다음, 12조의 계약 변경 사항은 ‘계약 성실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기술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 같이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정성호 의원님 안은 지체상금 감면이 발생한 경우 등 이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13조의 부당이득 환수, 14조의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15조의 과징금 부과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요, 제16조의 이의신청 규정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의 과징금 규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16조의 이의신청 규정은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의 계약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정성호 의원님 안은 위원회에 기재부장관 추천자를 추가하고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위원장 김병주 일단 전문위원님, 그것까지만 하시고.

이게 제정법이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소위원장 김병주 먼저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합시다. 정부 측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것보다도.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이 입법 배경 취지를 설명했듯이 지금 방산이 우리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체랑 계약을 하는 계약 여건에 있어서는 신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이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특례의 법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기재부 의견은 뭐니까?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입니다.

기재부도 방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도와 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계약법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방위사업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제정안으로 나와 있는 22개의 법안 중에서 5개 내용만, 콘텐츠만 방위사업법에 추가하면 효율적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방

위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청에서 생각하고 계셨던 그 어려움은 나무로 비교해 보면 뿌리에 문제 있는 것을 줄기나 잎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국방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이것 때문에 먼저 조정했는데 제정법은 사실 토의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기본은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는 예산회계법의 근본의 틀을,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법의 틀은 기획예산처의 헌법 같은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방사청은 이런 여러 가지 거대한, 정말 큰 또 긴급하고 이러한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방위산업의 속도 또 시대 변화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 이런 거로 봤을 때 방위사업청의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의 이야기는, 지금 방위사업청에 5개인가 법안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 법안에 부족한 콘텐츠는 다 담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헌법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제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회계법이고요. 여기로부터 파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법률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긴급한 사항, 큰 R&D가 있으면 R&D 이런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아 주겠다, 그러면 문제없다, 굳이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체계를 2개 났을 때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이 나오면 또 다른 부처에서 이런 법을 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법체계의 어떤 원칙적 측면을 기획예산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

보면 기획예산처도 굉장히 논리가 맞는 얘기고,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조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법안인데 그런 면에서 방위사업청은 대답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5개 법안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기획예산처하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수정하고 조정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긴급한 상황이 됐든 R&D가 됐든 뭐든 다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받아가면 어떻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섯 가지의 법률 속에 필요한 법안을 내놓으면 어떻냐는 게 또 기재부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차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말씀드릴……

○소위원장 김병주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성일중 위원의 주장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일종의 기재위원회라고 할까요 국회 상원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법사위도 있지만 법사위보다도 오히려 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횡포를 부린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법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보면 기재부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기존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개정해서 덧붙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제정해서 새로 법률을 만들어서, 새로 법률 만든다는 것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법률들을 개정해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예산을 쓰는 데 보면 조 단위가 거의 한꺼번에, 한번에 그냥 날아가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너무 줄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 하물며 법안조차도 금방 뚝뚝뚝 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의회가 갖고 있는 의무이걸 방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정법을 하겠다면 따박따박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와 규정을 지켜 가면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보면 효율성으로 따질 때 기재부의 의견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바로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들.

임 위원님.

○임병헌 위원 기재부 입장하고 국방부 입장이 다 이야기 들어 보면 일리가 다 있는데, 사실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라든지 언론 또 국방부, 기재부가 토론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해서 국민들 공감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판단해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정을 하든지 국가계약법을 보완하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송 위원님.

○송갑석 위원 저는 여기 자료 5페이지의 ‘국가계약법 적용에 따른 방위사업 추진 주요 제한사항’ 그래서 1·2·3·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방사청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고 맨 아래 당구장 표시로 기재부 의견이 나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방사청 것만 들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밑에 있는 기재부 의견 들어 보면 이 말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판단의 근거를 쥐야만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떼어 내서 법이 별도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법에서 보완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가장 유용하게 보고 있는 게 5페이지인데 이것만 봐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기가 힘든 여건이거든요.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선 입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약법을 제정 입법을 했는데 틀림없이 이게 방사청에서 또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입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부 입법안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차이가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도 업체지만 실제로 변호사 사회에서 방산업무의 지체상금과 관련된 소송을 맡으면 그분들 배만 불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도는 자체가 지금 법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의 소송을 맡으면 그 말은 변호사의 굉장히 큰 업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법률서비스 단체에 이 방산과 관련돼서 종사하던 사람들, 군인들이 또 방사청 직원들이 들어가서 고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지요.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재부하고 이견이 있다면 정부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이 돼서 방산 기업들이 지체상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오늘 방진회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업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자기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입니다.

최근 방산수출 확대로 소위 K-방산이 대박이 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국방위 위원님 비롯한 정부 인사와 군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방산업계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방산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주 위원장님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업계는 지난해 폴란드, UAE 특수 등을 통

해 가지고 17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며 한껏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기 수입국들은 우리 무기체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방산기술과 현지 생산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동시에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이후에 사용하게 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체계를 지금부터 연구개발, 생산해야만 방위산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보다 연구개발이 우선시되는 산업이고 늘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에 도전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적게는 10년에서 15년, 20년까지도 걸리는 오랜 기간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분단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산업이기도 합니다. K-방산은 지금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본부장님, 지금 시나리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개정이 필요한 건지, 기존 법에 얹어 썩우는 게 좋은 것인지 추가하는 게 좋은지 그 개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지금 방산수출 잘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뭐예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지금 사실은 K-방산이 아주 호기라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지만 방산업계는 사실 한편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에서 수출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가지고 신무기체계, 안 가 본 무기체계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의 제도상에서는 사실은 방산업계가 도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나왔었던 지체상금 문제, 부정당 제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발목이 걸려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방산업체들은 한 발은 지금 생산현장에 있지만 또 한 발은 나락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에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방위사업계약법을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방위사업청과 2년, 3년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방위사업계약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이 그동안 정부하고 업계가 해서, 업계가 요구한 것들은 더 많지만 그래도 22개 법안은 상당히 정제돼 가지고 정부하고 업계가 뜻이 맞아 가지고 이 법안은 필수불가결한, 이 법안만큼은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사실은 아까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국가계약법도 있지만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본부장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예.

○한기호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기 와 있는 법안소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직접 찾아뵈 분이 누구 있었습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의원실 보좌관들은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고서 법이 통과되길 바라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방진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방진회같이 소극적이고 또 기업들을, 방산 기업들을 위해서 대변을 못 하는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신들이 시급하다고, 기업들이 급하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위원장님부터 여기 있는 소위원회 위원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그러고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세요?

방진회 상근부회장이 지금 누구예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어제 새로 취임했습니다. 최병로 부회장님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내가 누구 취임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진회는 진짜 방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방산 기업들에 오히려 걸림돌 되는 데 아니예요?

○소위원장 김병주 본부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것 계속 토의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니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고 방사청 얘기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지요. 같이 논의를 더 해야 될 문제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논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논의하기에는 제한되니까 오늘 이걸 어떻게 할지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오늘의 결론 말입니다.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말에 방진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방진회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역주민하고 협의, 상생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기업의 이익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무기라고 하는 국방에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나는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방진회장, 상임부회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방사청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재부하고 몇 번이나 협의해 봤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기재부하고의 협의는 한 열 번 이상 협의를 쪽 해 왔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거 언제부터 긴급…… 제정법을 만들려고 지금 낸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정법을 내기 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예를 들면 지체상금이나 부정당 제재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언제부터 라인을 이렇게 좁, 통로를 열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게 언제부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지체상금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기재부랑 쪽 있어 왔고 이 법 제정을……

○성일종 위원 그게 언제예요? 실무 협의한 게 언제냐 이거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 법 제정하고 관련된 걸 따지면 이게 21년 이후에 국회에서 별도 특별법을 만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일종 위원 아니아니, 지체상금을 비롯해서 부정당업자의 제재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방산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좀 개정을 해 달라든지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게 언제냐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은 제가 언제부터 딱 스타트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류 년 이상 됐습니다.

○**성일종 위원** 뒤에 실무진은 누가 계세요, 이거 협의하신 분?

국방부, 언제부터 협의하셨어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고위공무원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법이 작년 10월 26일 날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작년 10월 이전에는 협의 안 했어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그 전에는 개별 사안으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했냐 이거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몰라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이게 구체적으로 9월서부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작년도 9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작년 9월부터 이 문제가 나왔겠어요? 그 전부터 나왔다면서요. 방사청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기재부 보고 부탁하고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도 안 해 보고서는 말이에요, 제정법 턱 내겠다고 그러면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위원님……

○**성일종 위원** 나는 이걸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방사청에 해 드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법으로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재부에 가서 얼마나 협의를 했고 협의하는 데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제정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성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재부는 5개 법안이 있는데 거기 콘텐츠를 다 담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담아 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

는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방사청은.

지금 모법은 하나잖아요, 어차피. 이 모법을 흔들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국가의 모든 법의 근간이 헌법인데 헌법을 또 다른 헌법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 계약법과 관련돼서.

그러니 지금 내가 언제부터 협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작년 9월부터 했다고 그러면…… 방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됐던 이 법들이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가 가지고 파일업(file up)이 쌓여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이러이런 걸 협의했는데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이게 3년이고 5년이고 축적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방위와 관련되는 특수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과 그동안의 실적이 딱 쌓여 있어야 기재부를 이길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재부도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 주겠다. 5개 법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협의해서 열어 줄 것 열어 주고 지체상금이나 부정당업자의 제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부여해 주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방사청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병주** 방사청, 할 얘기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우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기재부 국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22개 조항이 제정법인데 이 중에 이 법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조항이 10개 조항입니다. 그 10개 조항을 법에 다 넣지 말고—나머지는 기존 방위사업법에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걸 그대로 담아 오는 건데—그 10개 중에서 5개 조항만 반드시 신설해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5개 조항을 방위사업법의 개정안으로 내면 어쩌나 이런 제안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재부랑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재부 국장님, 이거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성일종 위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업의 목소리고 방사청은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대우조선 같은 그런 문제도 나왔고 그러니 그러면 이 5개를 비롯해서 플러스알파 되는 걸 답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답을 용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답을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라고요. 정부 제정법을 내더라도 정부 간에 협의해서 정부입법으로 갖고 오라는 이야기가,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재부가 동의하면 제정법으로 해서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5개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통로를 여세요.

기재부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위 기관처럼 누르니까 이 방위사업청 같은 데가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턱 넘기 어렵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문턱 확 낮추고 오라고 그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성일종 위원 다 들어 보시고 빨리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저희도 진정성을 가지고 애국심으로 대화부터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럼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지금 미래 먹거리로 뜨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 기재부가 빨리 문턱 낮추고 오라고 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제정법으로 낼 건지 5개 법안 다 담아 줄 건지 그걸 빨리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소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국가계약법에는 부정당……

○소위원장 김병주 됐어요.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

○설훈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 계세요.

○설훈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여러…… 이를테면 예산안들을 보면 1건당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제대로 심사가 되고 검토가 됐나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결정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볼 때마다 느껴 왔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방부가 별 검토 없이 하실 터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기관 내에서 국방부와 기재부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기호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정부안이 통일돼야 되는데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흘러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기재부 입장에서 당연히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정부입법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자 말자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기호 의원실에 간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건 저는 옳다고 봐요.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 국장님, 내가 지난주 숙제 준 것 해 왔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숙제 준 것 해 오셨냐고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예,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좌진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보좌진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야지요. 지난주에 제가 보고를 받고 임무 준 것은 제정법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기재부에서 봤을 때 어떤 의견을…… 1안 하나 두고, 두 번째는 기존 방위사업법에 추가할 항목 어디에 이거이거 이렇게 해서 보완하겠다, 2개 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서면 아직 안 만들었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

○소위원장 김병주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숙제 안 해 왔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두 번째 조항은 아직 숙제를 못 했고요, 첫 번째 지시한 사항은 준비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첫 번째 안, 기재부 의견만 얘기했기 때문에 2개 안 다 검토해서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방사청도 내가 숙제를 준 것 같은데, 2개 안 다…… 지난주에 안 줬던가요? 제정안에 가는 경우하고 방위사업법에 기재부 의견처럼 추가할 안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을 어디어디에 이런 항목을 추가하면 된다 이것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내가 안 했던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저희가 정리는 되어 있는데 보고는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고 그 2개를 가지고 토의하면 금방 되는데 왜 그것……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조금 이따가 10분간 휴식 후에 기재부도 된 것 주고.

그런 숙제를 주면 정확히 풀어서 여기서 심도 높은 토의를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사실 이 법안소위가 질 높은 법안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관계기관들을 다 불러서 이미

보고를 받고 또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스터디하고 했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설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의안들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시간을 줘야지 지금 여기 와서 갖다 놓고 ‘이것 검토하십시오’, 그냥 손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기재부도 전향적으로……

현재 법은 군인들은 군법을 적용하지 일반법을 적용 안 하잖아요. 왜?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요.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품과는 특수하지요. 일반 상품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군만 소요군이 아니라 일반도 되고 세계에도 나갈 수 있는 반면에 군의 무기체계는 소요군이 군으로 딱 제한돼 있고 또 계속 신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신의 신기술이. 신기술이 들어가게 하려면 ROC 같은 경우가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때그때 빨리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품을 만드는 계약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방산업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지요. 사실 우리 방산업체가 육성되지 않고는 우리 자주국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군법과 일반법밖에 없어요. 특수법은 군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위산업은 특별히 계약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서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 운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기재부는 전향적으로 봐서 2개 다 검토를 하시고.

국방부도 뭐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지, 방사청에만 맡기지 말고. 사실 1개 정부에서 2개 부처가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게 올라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겠어요?

국방부차관도 그렇고 방사청 차장님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특히 제정법은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관련 기재부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보류를 잠시 할 테니까 기재부하고 방사청하고 또 국방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해서…… 전체적인 계약법, 이런 특수 계약에 관계된 것들은 기재부도 동의를 했으니 어떤 형식으로 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방위사업특별계약법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왜? 군법처럼, 지금처럼 방위산업의 대세가 있을 때 여건을 국방위에서 조

성해 주는 게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또 저와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 그 해답을 좀 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하고 방위사업계약 법률안은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9분인데 15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딱 하나 하고 방사청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6번을 심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6번 병역법 일부개정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개정안이고요, 강대식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내용은 부정 편입하거나 전직한 전문연구요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기간 전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편입 취소 시에 남은 기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는데 단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부정한 경우에는 군사교육기간을 뺀 복무기간 전체를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런 복무기간 전체 무효화 사유에 현행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전직한 경우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편입 또는 전직 사유별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 내용인데요. 첫 번째,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로 인

한 경우 복무기간 전체를 무효화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하고 있고요.

다만 두 번째, 금품 수수 등의 경우에는 현행에 따르면 이전 복무기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한 방법은 둘 다 다르게 규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금품 수수 등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같이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우측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만 이 편입 취소 사유가 중간에 전직할 때 발생해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 기간만큼은 인정해주는 게 합리적으로 봐서 전직한 이후의 복무기간만을 무효로 하는,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는 35쪽 이하 정리를 했고요.

37쪽 2호 부분의 음영 처리된 부분이 수정의견, 즉 복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편입 취소 사유가 전직 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상 통일성을 위해서 예술·체육요원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33조의10 이하의 규정도 병무청과 같이 협의해서 조문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는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금품 수수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분류된 부분에 따라서 편입 취소와 전직 취소를 나누어서 편입 취소된 경우에는 군사훈련받은 기간만 제외하고 전부 다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전직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직한 이후에 복무한 기간만 무효로 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게 제제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술·체육 포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생깁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닙니다,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건 정도는 있고요. 기존에 편입 취소된 사유는 해고되거나 퇴직되는 경우, 비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1500명 이상씩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사례는 아직까지 사례로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비하기 위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사청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오신 분들은 대전에서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안전하게 복귀하세요.

오늘 병무청법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 대정부질문 관계로 못 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심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규백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2쪽의 개정안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 및 행사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날을 10월 11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날은 대한민국 최초의 소총인 대한식 소총을 시범 사격한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개최 및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었고요. 10월 11일은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의미가 부족하고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서 부적절하므로 차후에 방사청이 후보일을 검토한

후에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단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고요. 기존 기념일 등을 살펴봐도 방위산업을 조명하는 성격의 기념일은 기존에 없었고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이후에 방사청이 방산업체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방위산업의 날 후보일로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7월 8일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3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날짜를 7월 8일로 일단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그리고 기념행사 개최 및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83개의 기념일 중에서 지원 규정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이 부분은 명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만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부칙으로는 이 부분은 기념일 개최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최근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방위산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념일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8일로 수정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설훈 위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당시에 일정 때문에 우선 10월 달에는 기념일이 하도 많아서 10월 달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날짜 잡는 것이 좀 의미 있는 날을 한번 다시 검토해 봐라 했는데 거북선을 건조한 날로 잡으면 7월 8일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같은 법 개정안인데요.

의사일정 11항, 먼저 2쪽 개정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은 여기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가입 대상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합은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사업과 그리고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상, 제조·생산·연구·시설·장비 등에 관한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방위산업 보험목적물은 보안 관리를 위해 2개의 보험협회 및 방산공제조합을 통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현재 군정찰위성사업의 경우 연구기관이 사업주체인데 발사체 관련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지만 이를 취급하는 방산공제조합 공제보험을 이용할 수 없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대상에 연구기관을 추가하게 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어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사례로서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타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연구기관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공제보험을 이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12항부터 1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2월 22일 소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끝까지 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제기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중간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첫 번째 항목,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변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지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내용은 기존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시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고요.

삭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적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난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6페이지의 신속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합참의장은 각 군 등이 제기한 소요 심의 후에 소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첨단기술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소요가 아닌 신속소요 결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경우 수정하는 절차까지도 아울러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위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 신속소요가 무기획득 절차의 우회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은 타당하고 또 해외 사례로서 미국에서도 관련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타당은 하지만 지난 소위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무기획득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완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면 이런 신속소요 결정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8쪽 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제15조의2를 신설해서 신속소요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보면 수정의견은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규정입니다.

현행은 소요제기기관의 소요기획 지원에 관해서 법률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다만 사전개념연구가 시행령 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 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되 변경 또는 추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대한 예산 출연 근거까지 아울러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역시 출연 근거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15조의3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소요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험평가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험평가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은 신속소요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해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신속소요 추진

시에 이를 통합해서 실시하면 보다 신속하게 전력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의견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목, 1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사업의 실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서 시험사업 수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속시험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시험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거고요. 이게 정부안이고.

한기호 의원님 안은 시험사업 실시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시험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특히 한기호 의원님 안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험사업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단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각 군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시험사업 실시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이에 맞춰서 자구 수정을 했고.

그리고 성능입증시험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구성·운영 절차 등 관련해서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항목, 24쪽이 되겠습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시험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시험사업

을 포함시켜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 제17조의2에 시범사업 실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까지 이것을 명시할 실익은 적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항목,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행은 소요 결정 이후에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전시, 사변, 해외파병 등 긴급한 소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원식 의원님 안은 시범사업 수행 후에 단기간에 전력화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기호 의원님 안은 시범사업 실시 후에 선행연구가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기존 무기획득 절차가 무분별하게 생략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완 규정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29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17조제1항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항목, 31쪽입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대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시범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소요 결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추진한 사업의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 군 주도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평가에 준하는 성능입증시험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구매시험평가가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시

험평가의 내용과 성능입증시험의 내용을 비교해 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항목, 3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절차 간소화 내용입니다. 신원식 의원님 안인데요.

현행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추진 시에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운용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소요결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단기간 내에 중대한 성능개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절차 없이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이렇게 생략이 되게 되면 첨단기술 적용으로 인한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화가 해당 소요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어서 사업의 안정성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열 번째 항목, 3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특례 추가 등입니다.

현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의 특례 대상에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조달 그리고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하여 복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원식 의원님 안은 특례 대상에 정비 관련 장비 및 정비 용역을 추가하고 있고요. 정부안은 또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복수 계약이 체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정비 관련 장비 및 정비 용역 계약 시에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착수금·중도금 및 정산유예 등이 가능하고 원활한 조달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시범사업의 경우에 복수 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도 지난번에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의 부칙 사항도 지난번 보고사항과 동일하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통일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인 사항은

지난번과 동일하고, 다만 신속소요 결정 시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때 선행연구를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려사항을 제기해 주셨고 이 부분은 지체 없이 그게 결정이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신 사항, 전문위원 보고했듯이 보완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9번 항목인 34페이지 그 부분, 신원식 의원님이 발의한 성능개량 절차 간소화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신중 검토 필요로 의견을 냈는데, 소요 검증 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소요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군사적 작전능력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법무부 검토의견이 신중 검토,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 의견이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 지적은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3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훈 위원 예, 34쪽 맨 마지막의 법무부 의견.

○소위원장 김병주 또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21년도에 상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와 금년도 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이 안을 21년도에 만들 때도 실제로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개발된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는 것이 자꾸 지연되니까 다른 것도 문제가 생겨서 법안이 추진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

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방진회에서 나와 계신 분 아직 안 가셨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예.

○한기호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방진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예,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지금 기술 진보 속도 때문에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제도가 못 쫓아온다고 저희 업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품목들이 어떤 품목이 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저희들은 금액도 커지고 품목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고 기본적으로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단순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후적으로 더 큰 대형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순품목이잖아요. 이 법안에 되어 있는 건 단순품목이고 정비품목이고, 이와 같이 이미 사회에서 통용된 기술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건데, 이것 외에 방진회가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고도, 수준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끝나 버리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단계를 좀 높여서 실제로 사회에 완전한 통용이 아니라도 기술적으로 개발이 완료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진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방사청하고도 협조하고 국방부에도 설명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반 위원회 경우를 얘기하면 실제로 정부 부서만이 아닌 각종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진짜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방진회가 해야 될 일이, 방진회의 상근부회장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특별히 위원들하고 어떤 유착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방산 기업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 본부장급이 몇 명 계세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진흥본부장 안상남 4명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네 분이 누구인지도 우리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임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이 패스트트랙 책자를 보니까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 경우는 10년 걸릴 걸 9개월에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장갑형 의무후송차량은 12년 소요되는 것을 24개월에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행정적인 절차를 포함하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실제 그것을 제작하는 기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단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게, 도입한 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한 지 미국도 한 2년 전쯤에 도입한 걸로 압니다.

○임병헌 위원 2년 전쯤. 그러면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임병헌 위원 이제 하려고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임병헌 위원 이것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빨리 적용하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은 반면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절차는 동일하게 종전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검증하고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거나 생략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발기간 같은 것은 충분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혹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보완……

○임병헌 위원 그런 것은 부작용이 혹시 발생하면 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보완해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또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설훈 위원 패스트트랙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면 안 하니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빨리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을 잘 못 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법무부에서 지적인 대로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신중하게 부분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방사청 쪽에서 이런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써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더 적시가 돼야 제대로 된 법안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폐해점이 너무 많이 나올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패스트트랙 가는 대상이 여기 사례에 있듯이 성능개량하는 경우와 일부 계열화하는 경우 이쪽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 기간도 5년을 넘지 않게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을 하더라도 장기간 걸리거나 성능개량이 아닌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고 더군다나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또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성능개량으로 제한을 한다면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설훈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아까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34쪽에서 국방부 의견 ‘신중 검토’고 법무부 ‘신중 검토’였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전문위원 신항진** 이 부분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현행 유지요?

○**한기호 위원** 예, 그것 빼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현행 유지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이대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것을 마지막 법안 심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법, 17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의사일정 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 직제에 따르면 현재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직급별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 방사청 내에 실국장급 군인은 4명을 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비율을 직급별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방부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 내

군장성 유지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보고하기로 당시에 그렇게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운영의 연계가 강조되어 현역 군인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고 군인의 진급 적체·누락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이 법을 상정할 당시에 방사청 실국장급 장군 직위 4개 모두를 공무원으로 전환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는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방사청에 두는 군인의 정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이 인사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직급별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3쪽의 제7조제2항 이 부분을 그 문구를 정리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방위사업청 내에 군인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급별 군인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직급별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제가 이걸 법안 발의한 것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니까 방위사업청의 대령이신 분인데 전역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찾아왔어요. 와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위사업청에 소령·중령·대령 이와 같은 실무진에는 인원이 한 30% 되는데 상위직에는, 장군 직위에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후배들이 이 분야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는 어차피 외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후배들이 근무를 안 한다면 방산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을 제가 발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방사청이나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예비역들을 얘기하십니다, 예비역들. 5쪽을 보시면 거기에 고위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편해 가지고 이 자리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기동사업부장, 항공기사업부장, 헬기사업부장, 잠수함사업부장, 단장 이 네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인원들이 거의 다 예비역들이 하는데 어차피 국가에서는 예비역에 봉급을 주나 현역에 봉급을 주나 봉급 주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부하들의 사기도 같이 유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하부조직의 퍼센티지만큼 상부 조직도 같이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사실 법으로 모든 걸 하고 싶었었는데 방사청과 국방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고집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의도는 우리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근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일하는 우리 후배 장교들이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있으니까?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이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인력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장성급 장교도 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포션을 놓고 어디서 줄 여어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를 국방부가 고민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이쪽 방사청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면 한기호 위원의 주장이 맞습니다마는 큰 틀로 볼 때는 이게 국방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배려 안 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그냥 살려 두는 게, 현행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적절하게 알아서 현역을 뒤야 할 때는 현역을 두고 지금처럼 예비역을 둘 때는 예비역을 두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강제로 이렇게 뒤야 한다고 되면 국방인력을 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있으니까?

위원장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현역 시절……

○송갑석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병주 송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

지요.

○송갑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현재는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직제에 공무원의 정원을 100분의 70, 7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역이 유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의 장성급들이나 고위 인력에 현역 군인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비율을 늘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현행법으로도 국방부장관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됐을 때하고 현행 그대로 했을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대통령령으로 됐을 때가 조금 더 강제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방사청의 가장 문제는 제가 현역 때 느낀 것은 소요군인 현역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사청에 현역들이 많이 있어서 현역들의 의견이 다 잘 반영이 됐는데 현역들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요군이 원하지 않는 무기가 나오고 소요군이 필요한 무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방사청에 근무하던 친구들은 야전을 넘나들지가 않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거기서 소령·중령·대령 하고 장군까지 가야 되는데 장군들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최고 계급이 대령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우수자원들이 일단 안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책임져야 되는 자리는 현역을 보내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기동사업부장 계약하고 뭐해야 되고 항공사업부장, 헬기사업부장 이런 데만 현역을 보내고 실제 방사청에서 가장 핵심 자리인 방위사업정책국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역을 아예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사청 정책을 현역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과 괴리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에 우리가 육해공군이 불균형돼 있을 때 몇 대 몇 대 1, 2 대 1 대 1 강제조항으로 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그 당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어요. 육군 2, 해군 1, 공군 1 해서 2 대 1 대 1 그것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해공군의 불균형성이 사실은 해소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사청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도 구속력이 별로, 솔직히 방사청 입맛대로 갈 거니까 아예 법으로 한기호 의원님 발의한 대로 일단 이것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 안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큰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방산이 잘돼야 우리 국방이 사는데 장군 인력 조정은 여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임병헌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병주 예.

○임병헌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비율은 70% 이상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 운용은 70% 선에서 끝납니까, 더 올라가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70%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딱 맞추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70%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장관에 따라서는 일반 공무원을 더 좋아하면 70%에서 80%로 늘려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돼 있으나 저희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일정 비율을 정해 다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실제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군인들 사기가 올라가니까 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 부분은 장성급을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 전체 군인 정원 관리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한기호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여부를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현재 운용하는 게 사실상 7 대 3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 주면 오히려 군 사기도 좋아지고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방사청에서 오신 분 중에서 현역 손 들어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여기 방사청에서 오신 분도 지금 현역이 한 분 밖에 안 계시잖아요.

어느 부서,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십니까?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기획조정관실의 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대령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대령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계급이 뭐예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육군대령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현역 대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껏 얘기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소신껏이 되겠습니까, 여기 차장도 있는데?

(웃음소리)

○한기호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처음에 개청했을 때는 5 대 5였고 문민화하면서 7 대 3으로 바뀌면서 모든 직급 그다음에 계급구조 간에 3 대 7의 형태로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인 청의 입장에서는 군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최초의 5 대 5일 때보다는 3 대 7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진급과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 방사청이 처음에 창설될 때 5 대 5였지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이후에 7 대 3으로 바뀐 거지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 직위는 7 대 3 이 안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군인을 두둔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도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공무원도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현역에게는 희망을 박탈하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장군 진급 당신은 못 할 테니까 그냥 대령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느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안 좋습니다.

○한기호 위원 좋아요, 안 좋아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윤성현 안 좋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봉급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준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 법은 사실 제가 군에 있는 동안은 계속 현역들끼리 불평불만이 이 요소였어요. 사실은 전방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방사청에서는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방사청에 점점…… 전에 5 대 5일 때는 현역들이 많다 보니까 전방에 필요한 무기라든가 이런 체계가 거기에서 빨리빨리 구매도 되고 개발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많이 괴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사청 같은 데는 첨단무기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육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본적인 소화기부터 해서 아직도 40년 전의 무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105mm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작 밑의 장병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안 하고 생색 내는 무기, 첨단무기들은 잘 가고 하니까 현역들이 부족해서 자꾸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 의견에 서로 차이가 있으면 한 번 더 숙성과정을 거치고,

괜히 대통령령으로 할 것 차제에 이것은 아예 법으로 정해 버려서 당분간 하고 몇 년 해서 불균형이 해소되면 법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보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한기호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제가 너무 잘했다고 봤어요. 한기호 의원님이 발의 안 하면 저라도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현역 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청에서도 크게 문제 안 되면 이것은 수용해도 될 것 같고, 국방부에서는 아마 설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군 정원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내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사청 이쪽은 고위급일수록 현역이 더 있어야 됩니다. 밑의 하부구조에서 올라가도 결심하는 사업부장급 이상들에 현역이 있어 줘야 그 군의 비전도 제대로 알고 현재 실정도 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위에 다 현역이 없어 버리면 아무리 밑에서 건의해도 결심이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이것은 오늘은 설훈 위원님도 의견을 일부 달리고 계시고 또 국방부 의견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숙성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병 주 설 훈 성 일 중 송 갑 석
임 병 현 한 기 호

○청가 위원(1인)

송 옥 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신 향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신 범 철
기 획 관 리 관 유 균 혜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전 력 정 책 관 원 종 대
인 사 기 획 관 오 영 대
보 건 복 지 관 김 은 성
동원기획관직무대리 배 용 인

병무청

차 장 김 종 호
병 역 자 원 국 장 임 재 하
입 영 동 원 국 장 장 현 서
사 회 복 무 국 장 최 구 기

방위사업청

차 장 강 환 석
방위사업정책국장 한 경 수
방위산업진흥국장 김 진 홍
국방기술보호국장 권 영 철
정 책 조 정 담 당 관 윤 성 현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신 진 교
부 소 부 장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이 창 우
품 질 연 구 분 부 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 산 진 흥 본 부 장 안 상 남
정 책 기 획 팀 장 정 은 성
기 획 재 정 부 윤 석 호
국 유 재 산 심 의 관